

대전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1137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11374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9가단1377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민희, 이향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형욱

변론 종결2022. 7. 15.

판결 선고2022. 9. 16.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9가단1377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2. 26.자 매매계약은 29,285,37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가액배상 청구범위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범위를 선택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285,3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항과 같다.

2. 채권자취소권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의 무자력 아래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 428,756,000원, 소극재산 235,557,724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적극재산이 168,756,000원(= 428,756,000원 - 260,000,000원), 소극재산이 235,557,724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㉞ 채무자의 적극재산: 428,756,000원

① 이 사건 아파트: 260,000,000원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 당시 아파트 가액을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인 330,000,000원으로 본다.

을 제16 내지 19호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남편 K은 2011. 6. 14.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에 임차하였고, 피고도 2011. 7. 2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3. 5. 27. 채무자와 사이에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8.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0,000,000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가액에서 우선변제채권액

70,000,000원을 공제한 260,000,000원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적극재산이 된다.

피고는 채무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매매대금 240,000,000원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보다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자체를 적극재산으로 평가한다.

② 부동산(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5층 G호): 70,000,000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시가 220,000,000원에서 위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채무액으로 추정되는 150,000,000원을 공제하면 위 오피스텔은 70,000,000원의 가치가 있다(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③ 채권 및 유동성 자산: 98,756,000원

L 주식회사	20,584,333원	을 제2 내지 9호증
E	3,325,963원	
A	7,333,766원	
A	3,222,693원	
A	3,678,474원	
M은행	8,182,877원	
기업은행	13,527,894원	
N(주)	28,900,000원	
채권 및 유동성 자산	서울 서초구 O건물 P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원
합계	98,756,000원	

■ 피고는 채무자가 납입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4,800,000원도 적극재산으로 주장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는 위 공제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압류금지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제부금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금액을 포함한 적극재산액을 자백하였고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적극재산액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 액수는 주요사실인 채무자의 무자력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한 자백이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기도 한다.

■ 피고는 채무자가 리스한 차량의 가액 16,000,000원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대로라도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㉞ 채무자의 소극재산: 235,557,724원

① 원고에 대한 채무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는바(이 사건 피보전채권), 채무자는 2014.

9. 29. 당초 2억 원을 대출받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는 원금으로

162,000,000원이다(갑 제10호증).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으로 발생한 구상채무는 위 주채무와 중복되므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별개의 채무로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H은행에 대한 채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의 H은행에 대한 채무는 29,176,000원이다(대출일 2014. 4. 10., 2020. 12. 10.자 H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 원고가 별개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는 보증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자의 구상채무는 이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③ I카드에 대한 채무: 9,750,000원의 카드대금채무(2020. 12. 15.자 I카드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

④ J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4,631,724원의 채무(2020. 12. 10.자 J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고에게 이를 매도한 것이고 그 대금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하지만 피고는 2011년 7월경부터 거주해왔는데 2016년 12월경 이를 매매해야 했던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을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Q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2016. 12. 26. 10,000,000원, 2017. 1. 17. 23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뒤인 2017. 1. 19. 주식회사 Q에 99,290,000원을 채무 변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매매대금 일부에 대한 것이고, 주식회사 Q에 대한 채무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 드러난 채무도 아니며, 나머지 매매대금의 사용처는 알 수가 없고 채무자가 이를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의 회복 등에 사용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아파트가 채무자가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매도로 무자력이 초래된 점, 채무자와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매매로 일반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채무자와 남매간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호 판결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이 사해행위 이후인 2017. 1.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E 앞으로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가액의 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을 제외하고 260,000,000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액은 2019. 12. 11. 기준 채권액인 29,285,37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9,285,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9,285,37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효선

판사박상준

판사신지은

별지